안세재경저널 회원용 · 2025년 4월 30일 (수) · 주간 제18호 · 통권 제1725호 · 공익법인 주요 Q&A · 구독료 월 30000원

상장사·중소기업의 투명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저널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경영박사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5/ 4/ 30 통권 1725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공익법인 주요 Q&A ②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기업 평가에 가장 중요한 요소 : 기업지배구조
- 연간 75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 공익법인 주요 Q&A ②
- 2024년 귀속분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안내, 어렵다면 유예도 가능
- 미국 관세정책 대응, 관세청이 품목분류부터 함께 합니다
- 미(美) 관세조치, 우리 정치상황 관련 각국 동향 점검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부가가치세 면세인 인적용역 제공자가 해당 인적용역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저작권 부수양도시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p.11)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 戰略

〈수입·수익·차익에 대한 법인과 개인의 과세여부〉

개념, 구분		법인의 과세방법	개인의 과세방법
과세범위		순자산증가설(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거래이익, 또는 수입 : 익금)	소득원천설(소득세법에서 열거규정한 소득만 과세)
과세소득 종류		각 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종합, 퇴직, 양도, 금융투자소득
거주성 분류		내국법인 : 전세계 소득, 외국법인 : 국내원천소득	내국인 : 전세계소득, 외국인 : 국내원천소득
정상 수익의 범위	사업상 수입 (손익계산서 매출액 등)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전액 과세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열거됨
	자산양도액	모든 재산의 양도차액 (양도가 – 원가)	양도소득세 과세 별도규정 (부동산, 기타자산, 주식양도)
	임대료	모든 자산의 임대수익과세	(임대)사업소득으로 포함됨
	평가차익	순자산증가설로 과세 포함 (임의 평가이익은 익금불산입, 실현되면 과세)	과세소득에 열거안됨 (환차익 등 과세제외)
	무상수증 등	순자산증가설로 과세 포함 (이월결손금과 상쇄 가능)	증여세로 과세됨
기타의 수익		법인귀속금액 (순자산증가설로 과세)	열거안된 소득은 과세안됨 (뇌물, 습득물, 매장물 발견보상금·신소유권 취득은 기타소득열거됨)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박윤종공인회계사 작성)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타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주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725호 / 주간 18호 2025. 4. 30. (수)

·발 행 인 : 이윤선
·제 작 : ㈜안건조세정보
·대표전화 : 02) 829-7575
FAX : 02) 718-8565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 02) 829 - 7575
팩스 :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 051) 642 - 3988
팩스 :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 053) 654 - 9761
팩스 :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 010) 3409 - 2427
팩스 :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 010) 5255 - 6116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 특장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④ 즉답(010-2672-2250)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⑧ CEO·CFO 경영에세이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목 차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수입수익차이에 대한 법인과 개인의 과세여부	표지
CEO의 경영산책	기업 평가에 가장 중요한 요소 : 기업지배구조	2
세무·회계상담자문 (남들은무슨고민할까?)	- 부가세 신고 여부 문의 - 직원 경품지급 관련 - 매입 / 매출 부가세 신고 시점 차이에 대한 문의 - 회계프로그램 제품은 반드시 자산등록해야하나요?	4 5
눈에 맞는 절세미인	연간 75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6
매일절세재무요점	-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율 -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	8 9
직장인Survival	사회생활과 업무에 유용한 5가지	10
최신판례예규 (이런저런유권해석)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저술가가 양도하는 해당 교재의 저작권이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기준법규부가-74, 2024.06.20) - 「소득세법」 제52조제5항제4호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동법동조에 따른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사전법규소득-32, 2024.06.26)	11 12
세정뉴스와 해설	'얼마나 오를까?' 내년 최저임금 심의 오늘 시작…1차 전원회의 개최	13
마케팅 Tax consulting		12
세무정보	- 공익법인 주요 Q&A ② - 2024년 귀속분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안내, 어렵다면 유예도 가능 - 미국 관세정책 대응, 관세청이 품목분류부터 함께합니다 - 미(美) 관세조치, 우리 정치상황 관련 각국 동향 점검	14 38 45 47
세무환율정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3

기업 평가에 가장 중요한 요소 : 기업지배구조

이 재 권 안세회계법인 지속가능경영자문센터장
공인회계사, 경영학박사, CIA
한국윤리경영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현), 서강대 내부감사전문과정 교육운영위원
서울시립대, 국립 한밭대 겸임교수, 한국회계정보학회 부회장
한국경영교육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민관협의회 공정신뢰분과위원장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ERS(Enterprise Risk Services) 부대표
한국공인회계사회 정보기술연구위원장
Touche Ross Australia, Melborne : Advanced Technology Group 근무

국내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이 수익성 악화로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판매대금을 제때 정산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티몬·위메프 사태에 이어 홈플러스까지 유통 업체들의 대금 지연 문제가 잇따라 터지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삼일PwC의 '글로벌 투자자 설문조사(PwC's Global Investor Survey)'에 의하면, 투자자들은 기업을 평가할 때 기업의 재무성과를 넘어 기업지배구조(감독,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윤리 포함)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혁신, 경영진 역량, 인적자본관리, 사이버 보안이 상위 5위를 차지했다(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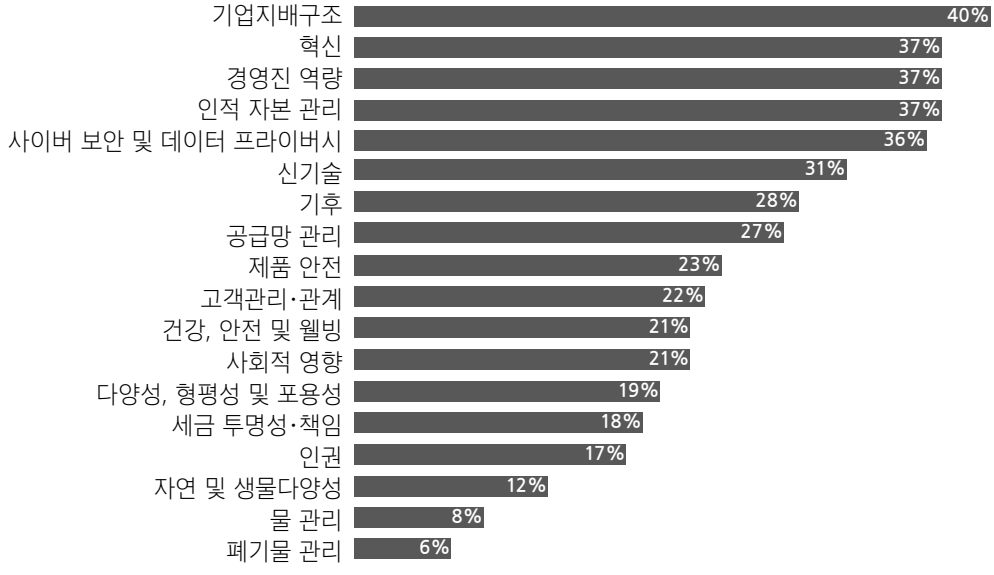

〈그림 1. 재무성과를 제외하고 기업평가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

*삼일PwC, 'PwC's Global Investor Survey', March, 2025, p.10.

글로벌 복합위기 환경에서 기업과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이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서는 건전한 거버넌스에 기초한 전사적 차원의 리스크 관리와 통제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CEO을 비롯한 임직원의 건전한 경영 윤리의식의 정립과 이에 바탕한 정직과 신뢰문화의 확산이 요청된다.

최근 글로벌 회계법인에서 약 35년의 감사 및 컨설팅 경험과 서강대 내부감사전문과정의 15년의 실무강의 등의 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안세회계법인 지속가능경영자문센터장인 이재권 공인회계사가, 기업 재무보고와 사회적 가치에 다각적인 연구를 하여온 박성환 교수, U.K에서 리스크 관리를 전공한 한국은행 기획감사팀장을 역임한 강기승 감사와 함께 " 21세기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경영핵심: GRC이해 (신영사)"도서를 출간하였다.

<21세기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경영의 핵심: GRC 이해>는 지속가능경영을 향한 실질적이고 통합적인 해법이 담겨 있다. 거버넌스,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GRC)를 단순한 규제 준수 형식에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가치창출을 위한 실질적인 경영전략적 틀로서 구축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풍부한 실무 사례,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해 독자들이 GRC 기본원칙과 실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특히 실패 사례 분석을 통한 교훈과 전략적 통찰은 경영층, 감사위원, 관리자들에게 유용한 실무적 지침이 될 것이다.

주문연락 829-7575
(총 445p. 27,000원)

부가세 신고 여부 문의

Q 당사가 100%투자한 해외법인의 생산설비 구축를 위해 당사 한국직원 십 여명이 짧게는 50여일 부터 길게는 160여일 정도를 현지 해외로 출장을 가서 현지 생산설비에 투입 되었습니다.
질문인 즉, 해당 인원에 대한 인건비 및 항공료 정도의 비용을 해외의 현지법인에 청구를 할 예정인데 이때 부가세(영세율) 신고를 해야하는지 여부입니다.

A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도 영세율대상이므로 귀사의 경우도 영세율 대상입니다.

직원 경품지급 관련

Q 직원에게 복리후생의 성격으로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의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 반영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직원에게 지급되는 물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증권계좌 계정과목

Q 본원은 모 증권사 계좌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 배당금이 입금 되어서 회계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해당 계좌를 보통예금 처리 해도 되나요?
해당 계좌에 예탁금 이용료라고 소액 입금되었는데 이 금액은 잡이익 처리 하면 되나요?

A 금융상품 등에 가입하지 않은 단순계좌라면 보통예금으로 처리해도 되며, 예탁금 이용료 입금액 잡이익 처리하시면 됩니다.

초보자코너

매입 / 매출 부가세 신고 시점 차이에 대한 문의

Q 매입 부가세와 매출 부가세의 신고 시점이 월단위 정도로 차이가 발생되는 내역이 있는데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해 공급시기에 발급된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해당 과세기간에 신고하시면 세무상 특별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급시기를 임의로 조정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라면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돼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회계프로그램 제품은 반드시 자산등록해야하나요?

Q

회계 프로그램을 구입 후, 5년 비품으로 보고 감가상각하며 쓰고있었는데(2021년 구입),
제품이 단종되어 사실상 강제로 다른 제품으로 추가비용을 들여 변경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단종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고객에게는 할인 등 혜택이 있어 약 500여 만원이 추가로 들거같은데, 꼭 자산등록을 해야할까요?
1. 자산등록을 해야한다면
- 기존 단종된 제품은 유형자산처분손실 처리하고, 새 제품은 할인 등은 무시하고 추가금액 500여 만원으로 등록하면 될까요?
- 할인혜택을 주기도 하니 기존 제품은 손실처리 안하고, 그냥 5년 계속 감가상각비 처리해도 될까요?
- 새 제품 상세 견적에 라이선스 300만원 + 교육비 200만원 으로 되어있다면, 교육비는 자산등록을 안하고 교육훈련비로 비용처리하는것이 맞을까요?
2. 자산등록을 안해도 된다면
- 그냥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 500여 만원을 자산등록하지않고 모두 비용 처리 해 버리면 안될까요?
(EX - 라이선스 300만원 = 지급수수료 300만원, 교육비 200만원 = 교육훈련비 200만원)
사실 이와같이 단종등의 문제발생으로 또 추가비용이 필요할 경우를 생각하면 단순하게 2번으로 처리하고 싶은데,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A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유무형의 자산은 자산으로 등록하셔야 하므로, 귀사의 경우 기존자산은 그대로 두고 추가금액에 대해 새로운 자산으로 반영하여 감가상각하면 된다고 판단됩니다.

연간 75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상담실 백종훈 차장

인적용역 등을 일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기타소득은 통상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며, 소득을 지급받는 자는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타소득 중 인적용역제공소득은 총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 60%를 공제하고 나머지 40%에 대하여 20%(지방소득세 포함해서 22%)의 세율로 신고 · 납부하는데, 결과적으로 총수입금액에 8.8%의 세율을 곱하여 신고 · 납부하면 된다.

기타소득은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합산 신고를 하는 것이므로,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원천징수에 의해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를 택하든지 아니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합산과세신고를 하든 두 가지 중에서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여기서 "연간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이라는 금액은 필요경비 60%를 공제한 후의 역산 금액이므로 총수입금액으로 따져보면 연간 총수입금액은 750만원(= 300 ÷ 40%)이 된다.

따라서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이 750만원(필요경비 공제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자라면 분리과세가 유리한지 종합과세가 유리한지에 대해서 면밀히 따져보는 것은 절세차원에서 당연한 납세자의 의무인 것이다.

필요경비공제한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가능

현행 소득세의 세율은 최저 6%에서 최고 45%인데, 과세표준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15%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원천징수한 기타소득과의 비교판단으로 그 절세효과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즉, 1년 동안 벌어들인 기타소득금액과 근로소득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을 종합합산 과세하여 신고 · 납부한다면 세액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5,000만원 이하이면 15%의 세율이 적용되나 기타소득금액 원천징수할 때는 20%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5,000만원을 초과한다면 24%나 35%, 38%, 40%, 42%, 45%의

세율이 적용되어 당연히 세금을 돌려받을 여지는 없을 것이다. 이때에는 당연히 기타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 분리과세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다른 소득이 없거나 기타소득금액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에 적용되는 한계세율이 원천징수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오히려 종합과세가 더 유리할 수 있다.

[사례] 근로소득으로 5,000만원(근로소득의 각종 소득공제금액은 2,200만원이라고 가정함).과 기타소득으로 750만원인 경우

1. 기타소득을 분리과세하는 경우
기타소득: 750만원×40%×20%=60만원
근로소득:5,000만원-2,200만원(소득공제)=2,800만원=(1,400만원×6%)+(1,400만원×15%)=84만원+210만원=294만원
총 납부세액 =① +② = 354만원

2. 기타소득을 종합합산 과세하는 경우
과세표준 : (750만원×40%)+(5,000만원-2,200만원)=300만원+2,800만원=3,100만원
소득세액 : (1,400만원×6%)+(1,700만원×15%)=84만원+255만원=339만원

상기의 사례를 도표로 비교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기타소득 분리과세	기타소득을 종합소득합산과세
과세표준	기타소득:750만원 × 40% = 300만원 근로소득:5,000만원-2,200만원 = 2,800만원	300만원(기타소득)+2,800만원(근로소득) = 3,100만원
소득세액	기타소득 : 300만원×20% = 60만원 근로소득 : 2,800만원 × 세율 = (1,400만원 × 6%)+(1,400만원×15%) = 294만원 총세액 : 60만원+294만원 = 354만원	(1,400만원×6%)+(1,700만원×15%) = 339만원
세액비교	기타소득을 종합소득합산하여 신고한 경우가 15만원 절약됨	

365 매일절세재무요점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월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율(단위 : 원/ℓ)

유종	인하 전 탄력세율	'21.11.12. ~'22.4.30.	'22.5.1. ~6.30.	'22.7.1. ~12.31.	'23.1.1. ~'24.6.30.	'24.7.1. ~10.31.	'24.11.1. ~'25.4.30.	'25.5.1. ~6.30.
		△20%	△30%	△37%	휘발유△25%	△20%	△15%	△10%
					경유△37%	△30%	△23%	△15%
					부탄△37%	△30%	△23%	△15%
휘발유	820	656(△154)	573(△247)	516(△304)	615(△205)	656(△164)	698(△122)	738(△82)
경유	581	465(△116)	407(△174)	369(△212)	369(△212)	407(△174)	448(△133)	494(△87)
부탄	203	163(△40)	142(△61)	130(△73)	130(△73)	142(△61)	156(△47)	173(△30)

* ()는 인하 전 세율 대비 인하폭(자료 = 기획재정부)

화 상속세 폐지 - 자본이득세 전환 해외 사례

	캐나다	호주	스웨덴
전환시기	1972년	1979년	2005년
과세시점	상속시	처분시(과세이연)	처분시(과세이연)
과세표준	상속시 시가 - 피상속인 취득원가	처분가액 - 피상속인 취득원가	처분가액 - 피상속인 취득원가
세율	15~33%	0~45%	30% 단일세율

水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

금융위원회	IPO 제도개선 ① 기관 투자자 의무확약 비중 20~40% 확대 ② 코너스톤 제도 개설 ③ 사전 수요예측 도입
금융감독원	① 기업공시 의무 강화 유상증자, 공개매수, 물적분할, 합병 등 심사 내용 강화, 기업·주주간 쌍방향 소통 ② 한계기업 조기 퇴출 기업회계감사 강화, 분식회계 적발시 상폐 심사 대상
금융위·금융감독원 공동	① 자본시장법 개정안 추진 ② 퇴직연금 계좌 내 주식투자 허용 ③ 장기투자세액공제 혜택 부여
거래소	상장폐지 절차 단축

木 4대은행, 주요 정기예금 만기별 금리

은행	상품명	1개월	6개월	1년
KB국민은행	KBStar 정기예금	2.65	2.65	2.65
신한은행	쏠편한 정기예금	2.65	2.60	2.58
하나은행	하나의정기예금	2.60	2.65	2.70
우리은행	WON플러스예금	2.70	2.68	2.65

사회생활과 업무에 유용한 5가지

1. “예의는 기본, 존중은 전략”
첫인상보다 오래가는 건 태도다. 직위나 역할에 관계없이 존댓말과 경청을 습관화하면, 협업과 신뢰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2. “질문은 무기, 침묵은 실력”
회의 중에는 꼭 필요한 질문을, 회의 밖에서는 함부로 말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 중심을 잡는다. 말보다 듣기가 중요할 때가 많다.

3.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
회의록, 피드백, 일정 관리. 작은 메모 하나가 실수를 줄이고, 신뢰를 쌓는 발판이 된다. 일잘러의 공통점은 꼼꼼함이다.

4. “감정은 관리, 표현은 선택”
짜증과 불편함을 바로 드러내는 순간 관계는 금이 간다. 감정을 누르라는 말이 아니라, 표현 방식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라는 뜻이다.

5. “한 발 먼저 움직이는 습관”
'지시받기 전에 움직이는 사람'은 항상 주목받는다. 상사가 원하는 걸 예측하고 한 발 먼저 행동해보자. 성과보다 신뢰가 먼저 쌓인다.

최 신 판 례 예 규

Marketing Tax consulting

부가가치세 면세인 인적용역 제공자가
해당 인적용역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저작권 부수양도시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저술가가 양도하는 해당 교재의 저작권이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기준법규부가-74, 2024.06.20

▌질 의

- 납세자는 고등학교 수학교사(이하 "납세자"라 함)로 근무하면서 '24.0.0. AAA방송사(이하 "BBB")와 공동집필자 2인과 함께 BBB교재 집필 약정서를 작성하고, 집필약정서 제4조에 따른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일체에 대한 양도 대가를 포함하여 집필료를 받고 있음

질의

- 교재 집필용역과 관련하여 저작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 신

방송 교육 교재를 집필하는 저술가가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의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저술가가 양도하는 해당 교재의 저작권이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제129조제2항제2호단서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에서 이자·배당소득이 발생한 후 해당 계좌의 실제 소유자와 계좌 명의자가 동일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100분의 4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법규소득-3915, 2024.11.04

▌질 의

- 질의법인은 투자매매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질의법인 고객 A는 '@@년 주식위탁계좌를 개설하였으나 '**.12.31.에 비로소 해당 계좌에 대한 실명확인 절차를 이행하였고
  - 그 결과 위 계좌의 실제 소유자와 계좌 명의자 모두 A로 확인됨
- 한편, 실명확인('**.12.31.) **前** 위 계좌에 위탁되어 있던 상장주식에서 배당소득이 발생함

질의

- 금융기관을 통한 이자 배당소득으로서 계좌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일치하나 금융실명법 제2조제4호의 실지명의가 확인되기 전에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

▌회 신

귀하께서 우리청에 신청한 서면질의 경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37, 2024.10.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37, 2024.10.17.】

「소득세법」제129조제2항제2호단서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에서 이자 · 배당소득이 발생한 후 해당 계좌의 실제 소유자와 계좌 명의자가 동일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실지명의가 확인되기 전 발생한 이자 ·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29조제2항제1호 본문에 따른 100분의 4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제52조제5항제4호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동법동조에 따른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사전법규소득-32, 2024.06.26

❙질 의

• 「소득세법」제52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시행사의 대위변제가 아닌 직접 납부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이하 "쟁점 소득공제") 적용 여부

❙회 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제52조제5항제4호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동법동조에 따른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폐기물처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폐기물 처리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법규부가-686, 2024.09.25

❙질 의

• 신청법인은 조특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면세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건설을 발주하면서,
  - 건설공사 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수량을 산출하여 처리용역비를 산정한 후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별도로 발주할 예정임

질의

• 국민주택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 신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폐기물처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폐기물 처리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른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얼마나 오를까?' 내년 최저임금 심의 오늘 시작…1차 전원회의 개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22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내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종 시한은 6월 말이나, 이 기간이 지켜진 것은 9차례에 불과하다.

이후 비공개로 전환되는 회의에서 위원들은 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정식으로 보고받고, 앞으로 회의 일정 등을 논의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급 기준으로 사상 처음 1만원을 넘었으나 인상률은 1.7%(170원)로 2021년(1.5%)을 제외하면 역대 두 번째로 작다. 이에 내년 최저임금은 인상률이 얼마로 결정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노동계는 지난해 최저임금으로 1만2천600원을 요구한 만큼 올해는 이보다 더 높은 시급을 요구하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법에는 규정돼있지만, 1988년 이후 적용한 사례가 없는 업종별 차등적용을 올해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동부가 운영하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는 최저임금위 규모와 구성을 조정하고,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변화를 주는 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최저임금 제도 개편은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올해 연구회 결론이 발표되더라도 실제 적용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제외 대상… 1→2억으로 완화

행정안전부가 취득세 중과세 적용 제외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내리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의 지역으로 비수도권이다.

올해 1월 2일 이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입한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8%, 12%)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6억원이하1%)을 적용한다.

올해 1월 2일 이후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 구입한 경우,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은 1세대의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의 주택 거래가 조금이나마 활성화되어 침체된 주택시장이 살아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민생 안정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60억원 둔갑한 꼬마빌딩, 알고보니 320억시가… 국세청, 부실 상속·증여신고 대거 적발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꼬마빌딩 및 고가 단독주택에 대한 가액 감정 결과 부실 신고로 부당하게 세금을 낮춘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체 감정평가 사업을 통해 총 5개년도 꼬마빌딩 896건을 감정평가한 결과 적정감정가액(9.7조원)보다 4.2조원이나 적게 신고한 상속증여 신고(5.5조원)를 적발, 적정가액으로 과세했다고 24일 밝혔다.

상속·증여 부동산은 시세가격 신고가 원칙이다.

하지만 상당수는 실세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기준시가 등으로 신고하는 것이 현실이다. 주변에 비교할 매매사례가 없다는 것이 그 사유다.

이에 국세청은 2020년부터 꼬마빌딩부터 자체 감정평가로 부실신고를 잡아내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고가 단독주택·아파트로 범위를 넓히고 있다.

국세청이 감정평가 사업을 확대함에 따라 최근 부실신고가 줄어들고 있다.

상속?증여신고시 기준시가 대신 자발적인 감정평가로 제값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올해 1분기 고가 부동산(기준시가 20억원 이상)을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한 비율(60.6%)은 2024년(48.6%)에 비해 약 12%p 높았다.

국세청은 '쪼개기 증여'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이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골프장?호텔·리조트 및 서화·골동품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